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

-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!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박수빈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재 서울시 부속의원은 진료, 처방,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기능을 수행하며 직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현재 이용 대상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, 청원경찰, 공무원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,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이나 타 기관 파견 공무원 등은 동일한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에,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과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도
부속의원 이용 근거를 마련하여, 실질적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
형평성 있는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사회복지요원 및 파견 공무원의 부속의원 이용 근거를 신설하는
것입니다.

□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
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와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